

(첨부2)

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 (가입대상) 1. ~ 12. (생략) 13.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하는 <u>자립수당 수급권자</u> 14. ~ 20. (생략)	제3조 (가입대상)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하는 <u>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수급권자</u> 14. ~ 20. (현행과 같음)